

# 평화군자료집 국제인도법 2003년 출처 : 피스넷

## 1부 국제인도법과 미국의 전쟁범죄

### 국제인도법이란 무엇인가?

천주교 인권위원회 박은정

국제인도법,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단어이다.

사람들이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법과 맞닥뜨린다. 분쟁이 생기거나 이해관계에 조정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법에 호소하고, 다툼이 생기면 법에 의존하곤 하는 것이다. 국제사회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법을 만들고 지키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만들어낸 국제법이 법대로 적용되지 않고, 힘있는 나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지난 3월 발발한 이라크전쟁도 국제사회의 규율과 질서를 일방적으로 깨뜨린 침략행위이다.

그간 인류가 겪은 아픈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국제법이 국제사회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데 국제법의 문제는 국내법과 같은 입법기관이 없다는 것이고, 국가의 서명 또는 비준이 없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법을 집행하는 강제적인 절차가 충분히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엄연히 국제사회가 법으로 제정하고 각국이 비준한 조약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상황하에서도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1세기에도 분쟁과 무력충돌은 끊이지 않고,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들의 피해는 줄어들지 않고 있기에 인도에 반하는 전쟁범죄를 방지하고 희생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국제인도법을 널리 알리고 강화해야 한다.

#### 1. 국제인도법의 정의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IHL)<sup>1)</sup>은 국제공법의 하나로 국제적 또는 비국제적 무력충돌 시에 전투능력을 상실한 군대요원과 적대행위 불가담자를 적대행위로부터 야기되는 고통의 경감 내지 그로부터의 보호를 규율하는 법이다. 국제인도법은 한마디로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인간의 고통을 예방·완화시키려는 적십자운동의 인도주의적 정신을 실정국제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이 법은 무력충돌 시의 인간의 기본권존중을 보장하려는 것이므로 인권사상을 제고하는 원칙이다.

#### 2. 주요원칙

1) 국제인도법은 순전히 전쟁을 포함한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1949년의 제네바제협약을 근간으로 하는 테반 해, 전쟁법은 전쟁의 방법·수단을 규율하는 법으로 1899년에서 1907년까지의 헤이그제협약이 그 주축을 이루고 있다. 전쟁법은 그 자체가 많은 인도적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국제인도법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실정국제법적 차원에서 볼 때 국제인도법은 전쟁법과는 독립된 법역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국제인도법의 주요원칙으로 불가침, 비차별, 안전, 중립, 정상생활보호, 보호, 구호 등 일곱가지가 있다.

[1] 불가침의 원칙 : 개인은 자기의 생명, 신체적·정신적 완전성, 그리고 자기의 개성으로부터 불가분한 여러 가지의 속성에 대해 존중받을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이다.

[2] 비차별의 원칙 : 개인의 인종·성별·국적·언어·사회적지위, 재산정도, 그의 정치적·철학적 또는 종교적 견해나 기타 기준에 입각한 어떠한 차별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개개인의 용태·욕구·고통 등으로 인하여 필요에 따라 특별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는다.

[3] 중립의 원칙 : 인도주의적 원조는 당해 전쟁 또는 충돌·사태에 대한 개입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다.

[4] 정상생활보호의 원칙 : 피보호자는 가급적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포로제도란 결코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전상대국의 구성원이 가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5] 보호의 원칙 : 국가는 자기 권력내에 있는 적군에 대해 국내적·국제적 보호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6] 구호의 원칙 : 누구나 구호와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다.

### 3. 주요사항

#### 국제인도법의 주요사항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상황 하에서도 인간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 고통의 경감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희생자(보호대상자)들의 국적, 종교, 계급, 인종 또는 정치적 견해에 대하여 차별함이 없이

- 전투에 가담하지 않거나 또는 더 이상 가담할 수 없는 사람은 모두 보호한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표장, 의료 요원, 시설, 장비 등도 존중한다)
- 전쟁의 수단과 방법을 금지 또는 제한한다.
- 인도법의 위반은 억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한다”

라고 할 수 있다.

### 4. 제네바협약

제네바협약은 원래 1859년 이탈리아통일전쟁 중 솔페리노전지에서의 인도적 활동경험을 바탕으로 국제 적십자를 창시한 앙리 뒤낭의 주창하에 제정된 최초의 적십자조약의 10개 조문을 기초로 탄생하였다. 이 협약의 목적은 전지에서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군인은 국적을 불문하고 보호하고 치료하여 주며 그들을 구호하는 요원이나 시설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있었다. 이후 이 조약의 원칙을 해전에 응용한 1899년의 헤이그협약과 1929년의 포로협약의 제정을 거쳐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적용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결함이나 미비한 상황을 보완하는 작업이 차수되어 3년여 동안의 노력 끝에 1949년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이 추가

된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4개의 협약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후 세계도처에서 발생한 무력충돌에서 나타난 전쟁의 방법과 수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특히 민간인보호제도상 보완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 1977년 제네바 모든 협약에 추가되는 2개의 의정서를 채택하게 되었다. 현행 제네바협약은 4개의 협약과 2개의 의정서로 되어있으며 국제인도법의 기본 틀이다.

#### 4개 협약

1. 육전에서의 군대의 상병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2. 해상에서의 군대의 상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협약
3. 포로의 대우에 관한 협약
4. 전시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

#### 추가의정서

5. 1949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6. 1949년 제네바협약에 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의정서

### 5. 국제인도법을 이루는 주요 조약들

1864년 제네바 협약이 제정, 채택되면서 발전된 국제인도법은 새로운 형태의 무력충돌과 신무기의 개발에 따른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조약들이 체결되었는데, 이를 연대순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1864년 전지(戰地)에 있어서 군대 부상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제네바협약

1864년 제네바 협약의 제 원칙을 해전에 적용

1868년 400g이하의 폭발탄 및 소이탄 금지에 관한 성 페테르부르크(St.Petersbourg) 선언

1899년 헤이그협약 - 육전에서의 전쟁법규와 관례준수

1906년 제네바 제협약 개정 및 발전

- 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협약 (신규 제정)

1925년 질식성, 독성 또는 기타의 가스 및 세균학적 방법을 전쟁에 사용함을 금지하는 제네바의정서 채택

1929년 2개의 제네바 협약

1949년 제네바 4개 협약

- 제1협약: 육전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
- 제2협약: 해상에 있어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조난자의 상태 개선
- 제3협약: 포로의 대우
- 제4협약: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 (신규 제정)

1954년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 협약 및 의정서

1972년 세균(생물학적) 무기 및 독소(毒素) 무기의 개발, 생산 및 비축 금지와 폐기예에 관한 협약 (BWC협약)

1976년 환경보호에 관한 협약: 환경변형 기술의 군사적, 적대적 사용 금지

1977년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에 추가되는 2개 의정서 제정:

- 제1의정서: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 제2의정서: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

1980년 과도하게 위험하거나 또는 무차별적인 효과를 지니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정 재래식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CW 협약)

- 제1의정서: 탐지불능 쇄편(碎片)무기에 관한 의정서
  - 제2의정서: 지뢰, 위장성(偽裝性) 무기 및 기타 장치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 제3의정서: 소이성(燒夷性) 무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의정서
- 1993년 화학무기의 개발, 생산, 비축 및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과 이를 무기의 폐기와 관한 협약(CWC협약)
- 1995년 실명(失明)레이저 무기에 관한 의정서 (1980년 CCW협약의 제4의정서)
- 1996년 지뢰, 위장성(偽裝性) 무기 및 기타 장치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개정된 의정서 (1980년 협약의 개정된 제2의정서)
- 1997년 대인지뢰의 사용, 비축, 생산 및 이전(移轉) 금지와 이를 무기의 폐기와 관한 협약(오타와협약)
- 1998년 국제형사재판소 규정 채택(ICC 로마규정) (2002년 7월1일자 발효)
-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 침략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

## 국제인도법과 전쟁범죄

천주교인권위원회 박은정

### 1. 이라크 전쟁과 국제인도법

전쟁은 전의를 가진 국가간의 무력적 수단에 의한 투쟁을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전쟁은 금지되었고 위법화되었다. 전쟁이 법적으로 금지된 오늘날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의 전쟁법규보다 전쟁 자체의 금지가 국제법의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지만 무력충돌은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국제인도법은 순전히 전쟁을 포함한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희생자 보호를 위해 적용될 수 있는 국제 인도법은 다음과 같다.

#### (1) 제네바 제4협약 - 전시에 있어서의 민간인 보호에 관한 협약

제2차 세계대전의 체험을 상기하여 1949년 8월 12일 채택된 ‘전시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협약’은 무력충돌의 희생자에 대한 존중과 보호 및 인도적 대우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 및 점령의 경우에 있어서, 교전당사국내의 외국인 또는 점령지역내의 주민이 교전당사국 또는, 점령국의 안전에 유해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그들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경우에도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자는 불리한 차별을 두지 않고 인도적으로 대우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실로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존중의 사상에 입각한 국제적 인도법전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 (2) 추가 1의정서 -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보호

1949년 제네바 4개협약이 제정된 후에 한국전쟁, 베트남 전쟁, 인도·파키스탄 전쟁, 기타 아프리카 무력분쟁에서 제기된 게릴라 전투원의 처우문제, 민간 항공기와 그 승무원의 문제 등 기존의 제네바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여러 문제와 무력충돌 중의 공중폭격·새로운 전쟁방법 및 신무기로부터 모든 민간인을 최대한 보호하기에 불충분하여 이에 대하여 2개의 추가의정서로 1977년 6월 8일 채택되었다. 2개의 추가의정서

는 130개의 조문에 2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졌다.

제1추가의정서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추가의정서 : 1949년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 (3) 헤이그협약-전시문화보호협약

전시문화보호협약(헤이그협약)은 문화재가 전쟁에서 심대한 피해를 받으면, 전쟁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문화재가 점점 더 파괴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되어 1954년 제5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어떤 민족의 문화재 손상은 곧 모든 인류의 문화유산에 대한 손상을 의미하고, 문화유산은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위 협약을 만들게 했다. 문화재관련 기타 협약으로는 △ 문화재의 불법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 △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 도난 또는 불법적으로 반출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이 있다.

### (4) 환경변형기술의 군사적·적대적 사용 금지에 관한 협약(ENMOD)

#### - 환경무기금지협약

환경무기금지협약의 목적은 환경을 변경시킬 수 있는 기술, 예를 들면 태풍진로 전환, 강우제, 강설제 등 첨단 환경변경기술 뿐 아니라 재래식 환경변경기술을 군사적 또는 적대적 목적으로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환경변경기술의 사용에 의한 대량의 환경파괴 효과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것이다.

과학기술의 진보가 환경의 변경에 관한 새로운 가능성을 열 수 있음을 인정하나 그러한 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용에 따른 인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이러한 사용에 따른 인류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을 실효적으로 금지하기를 희망을 목적으로 1976년 2월 UN총회에서 총회결의로 채택되었다.

### (5)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

국제형사재판소란 국제인도법 및 국제인권법 상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일명 ICC라고 한다.

ICC는 집단학살죄(국민 민족 종교적집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파괴할 목적으로 행한 살인), 전쟁범죄, 침략범죄, 인도에 반한 죄(민간인에 대한 공격, 살해, 노예화, 강간, 강제이주, 강제 임신, 성적 노예화 등의 성폭력, 인종차별)등 4가지를 관할하게 된다.

제2차 대전 전범의 처벌과 르완다 구유고슬라비아에서의 반인도적 사건 주모자처벌목적으로 특별재판소형 태인 전범재판소를 설치했으나 유엔총회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상설 국제재판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국가가 동의함으로써 ICC설립을 위한 로마규정을 1998년 7월 17일 채택하게 되었다.

## 2. 전쟁범죄2)와 국제인도법

##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예방조치

### ① 공격에 있어서의 예방조치

- 1) 민간인 및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을 극소화하기 위하여 공격의 수단 및 방법의 선택에 있어서 실행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2)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초기의 군사적 이익과 관련하여 과도한 것으로 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공격은 취소 또는 중지되어야 한다.
- 3) 민간주민에게 영향을 미칠 공격에 관하여 유효한 사전경고가 주어져야 한다.

### ② 공격의 영향에 대한 예방조치

- 1) 민간주민, 민간개인 및 민간물자를 군사목표물의 인근으로부터 이동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군사목표물을 인구가 조밀한 지역내에 또는 인근에 위치하게 하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 3) 군사작적으로 연유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기타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말하는데, 민간인인지 의심스러운 경우는 일단 민간인으로 간주하며 민간인의 정의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개인들이 민간주민 내에 존재하는 경우라도 그것은 주민의 민간적 성격을 박탈하지 아니한다. (제1의정서 50조 1항)

보호내용 : 민간인 주민 자체 또는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하는 민간인 개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로마규정 8조 2항 나 1)과 민간주민 자체에 대한 일체의 공격·공포의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폭격행위 및 무차별폭격<sup>4)</sup>은 금지된다. 도시, 읍, 촌락 또는 민간인이나 민간물자가 유사하게 집결되어 있는 기타 지역 내에 위치한 다수의 명확하게 분리되고 구별되는 군사목표물을 단일군사목표물로 취급하는 모든 방법 또는 수단에 의한 폭격과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초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은 무차별적인 것으로 간주된다.(제1의정서 51조)

- 
- 2) 전시범죄는 규율대상과 시간적 요소를 기준으로 '전시범죄'와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반하는 죄'로 구별. 전시범죄는 전시 법규 및 국제인도법규에 대한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데 반하여, 인류의 평화 및 안전에 반하는 죄는 전쟁의 개시·수행에 관한 실체적 국제법규의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 3) 무력충돌지역내에서 위험한 직업적 임무에 종사하는 기자들은 민간인으로 간주된다.(제1의정서 79조)
  - 4) 무차별폭격이란 ①특정한 군사목표물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격, ②특정한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 또는 ③그것의 영향이 제1의정서가 요구한 바와 같이 제한될 수 없는 전투의 방법 또는 수단을 사용하는 공격을 말하며, 그 결과 개개의 경우에 있어서 군사목표물과 민간인 또는 민간물자를 무차별적으로 타격하는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한다.
  - 5)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은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국영 TV방송사 건물을 폭격했다. 인권단체와 세계언론은 '공격은 군사목표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방송국을 민간시설물로 확대 해석해 맹비난했지만, 미국은 '민간시설물이라도 군사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용될 경우엔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 6) 52조에 부여되는 일반적 보호는 그것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문명화된 조치나 보호를 갖추지 않은 한낱 선언에 불과하며, 민간물자를 직접적 공격으로부터만 보호받게 되어 있을뿐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위험으로부터는 무방비상태이며, '민간물자'에 관한 정의의 모호성과 군사목표물에 관한 정의의 혼란한 주관성으로 군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 임의로 판단함으로써 실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등 문제점이 있다.
  - 7) 로마규정 제8조 2항 '나'의 (4)

그간 국제법은 전쟁시에 민간인보호에 관한 규정을 두는데 인색하였고, 1,2차 대전을 거치면서 민간인보호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무기와 전쟁방법이 개발되었지만 민간인보호에 대한 조치와 제재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국제인도법에 민간인, 민간물자, 환경 그리고 문화재 보호에 조항과 그리고 최첨단무기인 대량살상무기의 규제를 살펴보면

#### (1) 민간인

민간인<sup>3)</sup>이란 군대에 소속하지 않고 또 적대행위에 가담치 않은 자, 군대와 교전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또한 교전당사국은 전쟁의 영향으로부터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해 각자의 영역에 병원·안전지대 및 지점 을 설정할 수 있다.(제네바4협약 14조)

그리고 보복의 수단으로서 민간주민 또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제1의정서 51조 6항)

## (2) 민간물자

민간물자란 군사목표물이 아닌 모든 물건·건물·사업장·시설들을 말하며 민간물자<sup>5)</sup>는 공격 또는 보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제1의정서 51조) 공격의 대상은 엄격히 군사목표물에 한정된다. 물건에 관한 군사목표 물은 그 성질·위치·목적·용도상 군사적 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고, 당시의 지배적 상황에 있어 그것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파괴, 포획 또는 무용화가 명백한 군사적 이익을 제공하는 물건에 한정된다. (동 52조)

보호내용 : 부상자, 병자, 허약자 및 임산부를 간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병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하며(제네바4협약 18조), 적국일지라도 민간인에게만 향하는 의료품 및 병원용품, 그리고 종교상의 의식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물품 등 모든 타송품의 자유 통과를 허용하여야 한다.(동 23조)

식료품·식료품생산을 위한 농경지역·농작물·가축·음료수 시설과 그 공급 및 관개시설과 같은 민간주민의 생존에 필요 불가결한 물건들을 공격·파괴·이동 또는 무용화하는 것은 금지된다.(동 54조 2항) 그리고 위험한 물리력을 포함하고 있는 시설물, 즉 댐·제방·원자력발전소는 비록 군사목표물인 경우라도 그러한 공격이 위험한 물리력을 방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민간주민에 대해 극심한 손상을 야기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동 56조 1항), 예배장소, 가옥이나 기타 주거 또는 학교와 같이 통상적으로 민간목적에 전용되는 물건이 군사행동에 유효한 기여를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지의 여부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 렇게 사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추정된다.(제1의정서 52조 3항)<sup>6)</sup>

민간 대상물, 즉 군사목표물이 아닌 대상물에 대한 고의적 공격(로마규정 8조 2항 나 2)과 어떤 수단에 의하든, 방어되지 않고 군사 목표물이 아닌 마을·촌락·거주지 또는 건물에 대한 공격이나 폭격은 금지된다. (동 5)

## (3) 환경

환경변경기술(Environmental Modification Techniques)이란 자연과정의 고의적 조작을 통하여 지구(생물상, 암석권, 수권 및 대기권 포함) 또는 외기권의 역할, 구성 또는 구조를 변화시키는 모든 기술을 의미한다. 환경변경 기술이 적용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자연과정의 파괴를 지진, 해일, 일정지역의 생태학적 균형의 파괴, 날씨의 변화(구름, 강우, 태풍, 폭풍 등), 기후의 변화, 해류의 변화, 오존층의 상태변화 및 전리층의 상태변화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보호내용 :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심각한 손상으로부터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투중에 주의조치가 취하여져야 하며(제1의정서 55조) 또는 그러한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것(동 35조 3항). 그리고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서도 의도적인 공격의 개시(로마

5) 2003년 이라크전쟁에서 미영 연합군은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국영 TV방송사 건물을 폭격했다. 인권단체와 세계언론은 '공격은 군사목표물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방송국을 민간시설물로 확대 해석해 맹비난했지만, 미국은 '민간시설물이라도 군사목적의 범위안에서 이용될 경우엔 공격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해 해석에 논란의 여지가 있다.

6) 52조에 부여되는 일반적 보호는 그것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문명화된 조치나 보호를 갖추지 않은 한낱 선언에 불과하며, 민간물을 적절히 공격으로부터만 보호받게 되어 있을뿐 군사목표물을 표적으로 하는 공격에 수반되는 간접적인 위험으로부터는 무방비상태이며, '민간물자'에 관한 정의의 모호성과 군사목표물에 관한 정의의 혼재한 주관성으로 군지휘관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서 자기 임의로 판단함으로써 실수하게 될지도 모르는 등 문제점이 있다.

규정 8조 2항 나 4))는 금지된다.

이러한 보호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그러한 손상을 끼치고 그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 또는 생존을 침해할 의도를 갖고 있거나 또는 침해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투방법 또는 수단의 사용금지를 포함한다. 보복의 수단으로서의 자연환경에 대한 공격은 금지된다.(제1의정서 55조)

격심한 효과를 미치는 환경변경기술의 군사적 또는 기타 적대적 사용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와 인류복지에 극히 해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정하며 그 사용을 금지한다.(환경무기금지협약)

#### (4) 문화재

문화재란 종교적이거나 세속적인 건축, 예술, 역사의 기념물과 같이 모든 국민의 문화적 유산에 대해서 큰 중요성을 갖는 동산 또는 부동산 문화재, 고고학적 유적지, 하나의 전체로서 역사적 또는 예술적인 관심사가 되는 건축물의 집단, 예술작품, 예술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관심사가 되는 고본, 서적 및 기타 물건들, 과학적 수집품, 중요한 장서 등이다.

보호내용 : 국민의 문화적 또는 정신적 유산을 형성하는 역사적 기념물, 예술작품 또는 예배장소를 목표로 한 모든 적대행위를 범하는 것과 물건을 보복의 대상으로 하는 것(제1의정서 53조)을 금지한다.

문화재와 그의 직접 주변과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장비를 전시에 파괴나 손상에 노출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문화재의 어떠한 형태의 절도, 약탈, 불법사용 및 문화재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문화재 파괴행위도 이를 금지하고 예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종식시켜야 한다. 동산문화재를 강제로 징발해서는 안된다(헤이그 4조).

문화재가 군사작전에 의하여 손상을 받아 그 문화재를 보존할 조치가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보존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동 5조)

#### (5) 특정무기 금지

어떠한 무력충돌의 경우라도 적을 해하는 수단의 선택권이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과도한 상해 또는 불필요한 고통을 야기하는 성질의 무기 · 발사체 및 전투물자와 방법,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적으로 극심한 손상을 줄 전투방법 및 수단은 금지된다(제1의정서 35조).

내용 : 금지된 무기에는 ①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무기(육전규칙 23조 1항), ② 독 또는 독으로 가공한 무기(동(a)), ③ 밀실성 가스나 유독성 가스의 살포를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투사물(독가스금지 선언 1항), ④ 세균학적 · 생물학적 독소무기 ⑤ 중량 400g 이하의 불사물로서 폭발성 · 소이성의 물질은 충전한 것(상트페테르부르크선언) ⑥ 덤덤탄(덤덤탄사용금지선언), ⑦ 핵무기, ⑧ 화학무기, ⑨ 환경변형기술의 적대적 사용, ⑩ 특정재래식무기, ⑪ 대인지뢰 등이 있다.

그리고 신무기, 전투수단 또는 방법의 연구·개발·획득 및 채택에 있어서 체약당사국은 동 무기 및 전투수단의 사용이 본 의정서 및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국제법의 다른 규칙에 의하여 금지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할 의무가 있다.(제1의정서 36조)

### 3. 국제형사재판소와 전쟁예방

지난 세기 인류는 분쟁을 통한 수많은 대량학살과 인종청소 등 비인도적 만행을 목격했고, 국제인도법은

전쟁이나 무력충돌의 상황하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서도 민간인은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 민간인의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얼마나 절실한지 이번 전쟁에서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를 인류는 제대로 처벌한 경우가 드물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그런 인류의 무력함에 대한 반성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죄를 지은 자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국제사회에서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상설국제재판소이다.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은 소급되지 않는다. 로마규정이 발효된 시점인 2002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만 관할할 수 있고, 자국 영토 내에서 범죄가 발생한 국가 또는 피의자의 국적국이 로마규정의 당사국인 경우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03년 3월 전세계가 한 목소리로 전쟁을 반대했고, 끝내는 유엔안보리의 승인없이 미국은 무력으로 이라크를 침공했다. 드디어 이라크전쟁의 전쟁 범죄자를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심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제형사재판소는 침략범죄의 재판관할권(비당사국의 행위가 재판 대상이 되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그러므로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이 이라크를 침공하더라도 침략 범죄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

그리고 2002년 7월 12일 미국은 '비당사국의 평화유지군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의 기소를 1년간 면책한다'는 결의안을 유엔안보리에서 강행 통과시켰고, 지난 6월 12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1년간 연장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따라서 이라크전쟁 중에 발생한 전쟁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미국의 반국제형사재판소 정책은 2001년 12월 31일 로마규정에 서명하였으나 의회의 비준을 계속 미뤄오다가 급기야 지난 2002년 5월 서명 자체를 철회한다고 선언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에 대한 불참을 선언했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미군의 기소면책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한술 더떠 각국 정부에 '미국민은 국제형사재판소에 인도하지 못하게 하는 불처벌협정'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나라들에게 군사적·경제적 지원을 중단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 이러한 반인권적 불처벌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미 아프가니스탄, 이스라엘, 루마니아, 동티모르 등은 면책특권협정에 서명하였고, 최근 많은 나라들이 이에 서명하고 있다.

이러한 불처벌협정은 국제법상 명백히 불법인 것이다. 미국의 불처벌협정 체결 시도는 인류사상 가장 극악무도한 범죄들이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지난 십여년간 계속되어 온 국제적 노력을 단번에 훼손시키려는 행위인 것이다.

국제형사재판소가 중요한 이유는 범죄자를 처벌하는 목적도 있지만, 반인도적 범죄를 항시적으로 억제시키는 예방의 역할에 있는 것이다.

법규 강화와 범죄자 처벌이 범죄를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국제형사재판소는 더 이상 참혹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인류의 간절한 바램이자 희망이다.

## 참고문헌

이병조, 이중범 공저, 국제법신강, 일조각, 2002

대한적십자사(<http://www.redcross.or.kr>)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국제형사재판소』란 무엇인가?, 2002

# 이라크 전쟁과 미국의 전쟁범죄 개요

다산인권센터 정상용

이라크 전쟁에서 발생된 수많은 피해들의 대부분은 미·영 연합군의 무차별 공습에 의해 발생되었다. 미 공군중부사령부(CENTAF)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투하된 폭탄의 상당수가 적의 군사시설보다는 전장을 광범위하게 피격해 부수적 피해가 커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총 1만 8898곳의 공중폭격 중 이라크 정권 지도부나 군 지휘부 등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은 전체의 9.5%인 1799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반 군사적 이익과의 관계에 있어서 명백히 과도하게 민간인에 대하여 부수적으로 인명의 살상이나 상해를, 민간 대상물에 대하여 손해를, 또는 자연환경에 대하여 광범위하고 장기간의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sup>7)</sup>이다.

실제 언론보도를 통해 보여진 미·영 연합군의 공습은 군사목표물에 대한 정밀 폭격이 아닌 '충격과 공포'를 위한 무차별 폭격이었으며, 그러한 행위는 전쟁의 참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법규들, 국제 인권조약과 규정 및 협약에 대한 명백한 도전행위였다.

## 비 군사목표물에 대한 공격

모든 분쟁에서의 공격대상은 군사목표물로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군사목표물이란 "성격이나 목적, 위치상 상대국의 군사작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시설"<sup>8)</sup>로 그 외의 모든 대상들은 비 군사목표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의 미·영 연합군은 특정 민간시설에 대한 직접 공격을 서슴지 않았다.

언론을 통해서도 자세히 보도된, 3월 26일 미군의 바그다드 소재 이라크 국영 TV방송사에 대한 폭격은 명백히 민간시설에 대한 범죄행위였다. 그러나 폭스 뉴스, MSNBC, CNBC, NBC, CNN, 뉴욕타임스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은 오히려 "놀랍게도 미국은 아직 이라크 TV방송국을 제거하지 않았다"며 민간시설인 이라크 국영 TV방송사에 대한 공격을 종용하였다. 전쟁에 대한 참상을 보도하고, 후세인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이라크 방송사를 폭격함으로써 전쟁에 대한 정보를 차단하고, 이라크군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목적이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곧 성명을 발표하고 "바그다드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방송국에 대한 미국의 폭격은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공격으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제기자연맹(IFJ)도 "방송국에 대한 공격은 미국의 이라크 언론에 대한 검열행위"라며 비판하였다.

미·영 연합군의 민간시설 파괴는 치밀하고도 전략적으로 행하여졌다.

개전 초기 이라크 제2의 도시 바스라를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폭격을 감행하며, 와파 알-카이드댐을 파괴하였다. 이로 인해 수력발전소와 송전시설이 파괴되어 전력과 수돗물의 공급이 차단되었다. 3월 21부터 바스라시 200만 시민에 대한 식량과 식수 등 생필품의 공급 역시 차단되었다며, 국제적십자사 대변인 플로리안 웨스트펠은 "바스라 주민 60%가 식수를 구하지 못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적십자사는 또한, 4월 5일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교량이 공습에 의해 파괴되었다며, 교량의 파괴로 인해 "바그다드 남부에 있는 병원들에 대한 접근의 차단으로 케르발라, 나자프 등지의 민간인 부상자에 대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7) 로마규정 제8조 2항 '나'의 (4)

8) 제네바 협약 1장 52조 2항

이 외에도 미·영 연합군의 일방적인 공격은 3월 26일 루트바의 어린이병원 폭격, 3월 27일 바그다드 커뮤니케이션스터워 폭격, 3월 28일 바그다드 시내 시장 폭격, 4월 2일 바그다드 시내 적십자사 산부인과병원 폭격 등 민간시설에 대한 어떠한 보호도 행해지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민간차량에 대한 조준사격, 4월 8일 외신기자들이 머물고 있던 바그다드 시내 팔레스타인 호텔에 대한 미군 탱크의 포격, 나시리야 의약품 창고의 폭격, 교량과 도로, 통신시설 파괴 등으로 이라크 전체를 공포로 몰아갔다. 이로 인한 이라크 상황을 세계보건기구(WHO)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전력의 차단과 식수공급의 불안정, 도로 등 접근로의 차단으로 인해 부상자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고하였다.

한편, 4월 2일 미군은 ‘이라크의 주요 기간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좀더 조직적인 공격을 가하라’는 가이드라인을 하달했다. “이동 대공포 등 이라크 전력에 대한 공중 폭격과 함께 식수, 전기, 통신, 도로, 하천, 교량 등 기간 망을 장악한 후 내부 분열을 기다려 볼 수 있다”는 아하론 지비 이스라엘 정보사령관의 인터뷰는 정밀 폭격을 통한 사담 후세인 정권의 무력화가 아닌, 이라크 민중의 생존에 불가결한 요소를 박탈함으로써 기아를 전투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sup>9)</sup>를 미·영 연합군이 전술적으로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민간인 학살

앞에서 살펴본 비 군사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행위는 곧 직접적인 민간인들이 피해로 나타났다. 피해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미국의 NBC방송은 4월 8일 보도에서 민간인 사망자가 2천 7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문 조사연구원과 반전 운동가들로 구성된 국제인권단체 Iraqbodycount.net의 통계를 따른 것으로 세계적으로 상당한 신뢰도를 인정받고 있다고 전하였다. 한편, 6월 30일 현재까지 Iraqbodycount.net의 통계에 따르면 민간인 사망자의 수는 최소 6011명에서 최대 76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하고 있다.

적대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공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제네바 협정은, 민간인에 대한 타격을 금지하며, 불가피한 상황일지라도 민간인을 우선 보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영 연합국의 공격에서 민간인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미군 중부사령부는 일선 장병들에게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18~35세의 이라크 남성들은 모두 ‘군인’으로 간주 할 것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모든 민간인을 이라크의 비정규군 또는 테러범으로 추정토록 하는 전투지침을 내리기도 하였다. 미군 측은 자살폭탄공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이는 명백한 제네바 협정의 ‘민간주민 보호’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명령이 있은 후 나자프, 샤프라, 바그다드, 나시리야 등 미군 검문소에서는 민간인 차량에 대한 직접적인 총격으로 약 127명이 민간인이 사망하였다.

Iraqbodycount.net을 기초로 하여 통계를 추정한 결과 공습에 의한 피해사례가 77.4%<sup>10)</sup>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이는 첨단 정밀 유도 미사일을 이용한 정교한 공격으로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미·영 연합군의 주장과 맞지 않는 것이었다.

특히, 개전 초기 이라크 전역에 걸친 대규모의 공습으로 약 450여명이 사망하고, 350여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공격은 나자프, 바그다드, 바스라 등의 도시들에 집중되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3월 23일과 24일 이를 동안만도 민간인 98명이 사망하고, 490명이 부상당했다고 무함마드 사이드 앗 사하프 이라크 공보장관의 말을 인용하여 보도하였다. 일 자지라 방송 역시 23일 남부 바스라에 대한 미군 F-16 전폭기의 공습으로 민간인 50여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후 전쟁이 갈수록 치열해짐에 따라 미·영 연합군의 공격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민간인 주요 피해사항은 3월 26일 바그다드 시내에 대한 공습으로 최소 15명이 사망했으며, 27일과 28일 나자프 민간인지

9) 제네바 제4협약 3절 54조 ‘민간주민의 생존에 불가결한 물건의 보호’

10) 이 수치는 평화권모임이 4월 8일까지의 Iraqbodycount.net을 기초로 하여 민간인피해자 수를 유형별로 나누어 통계를 계산한 것이다. 이 글에서 언급된 민간인 피해 숫자 또한 같은 방식으로 산출하였음을 밝혀둔다.

역에 대한 폭격으로 75명이 사망하고, 268명이 부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28일 바그다드 알 나세르 시장에 대한 폭격으로 100명의 사상자가 났다.

공습은 바그다드의 빈민촌 슈알레(Shu'ale)에서도 일어났다. 영국의 인디펜던트의 로버트 피스크 기자는 폭탄이 건물 파괴용이 아닌 인명 살상용으로 제작된 것이라며 당시의 상황을 묘사하였다. “미사일이 터지면서 금속 파편 더미가 사람들, 주로 여성과 아이들에게 떨어졌으며, 벽돌로 허술하게 지은 집의 벽을 뚫고서 사람의 사지와 머리를 잘라버렸다. 시장 맞은 편 큰길가 벽돌집 거실에 있던 세 형제의 몸을 베고, 두 집 건너에 사는 자매 둘도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슈알레 마을은 가난한 시아파 무슬림의 거주지역으로 알 누르 병원의 한 의사는 최소한 어린이 15명을 포함하여 5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무차별적인 공습은 바그다드를 비롯하여, 바스라, 나자프, 코말, 모술, 나시리아, 루트바, 힐라 등 이라크 주요도시와 이라크 전역에 걸쳐 진행되었다. 병원, 시장, 농장, 민간인 차량, 이슬람 성지, 민간인 주거 지역과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공습, 시가지에서의 직접적인 조준사살 등 민간주민에 대한 공격은 민간인 희생을 최소화하여야 하는 교전규칙을 무시한 행위였다. “우리는 민간인 몇 명을 쏘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뉴욕 타임즈의 해병대 하사관과의 인터뷰 기사를 통해 미국이 이라크 정권과 군대만이 아닌 이라크의 어린이들과 여성, 노인 등을 상대로 전쟁을 벌였음을 알 수 있다.

## 생명과 환경에 대한 재앙

1972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전 세계 113개국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다. 국제 사회는 이곳에서 “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한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하였다. “인간은... 자유, 평등 그리고 적정수준의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생활조건을 향유할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현세대 및 다음세대를 위해 환경보호와 개선에 책임을 진다.”는 선언은 지구의 미래와 인간의 생활하는 공간인 지구환경에 대한 심각한 위기의 반영이었으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바른 선택이었다.

이후에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파괴와 생명의 위기로 인해 국제사회는 오존층 보존을 위한 국제협약(1974년, 비엔나), 바젤협약(1989년, 스위스), 리우회의(1992년, 브라질) 등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의 보존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다. 또한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와 관련하여 1995년 독일 베를린에서의 기후변화협약 제1차 당사국총회를 시작으로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제3차 당사국총회가 개최, 2000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관한 의정서를 최종 채택하였다. 교토의정서에 의하면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이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할 의무가 주어졌다. 하지만 2001년 3월,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8%를 차지하고 있던 미국이 돌연 탈퇴함으로서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무산되었다.

산업화 이후,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을 중심으로 자행되어온 지구환경파괴는 결국 인간의 생활환경까지 파괴하기에 이르렀다. 생물종의 멸종, 지구온난화 등은 국경의 경계가 없었다. 한 나라에서 자행한 환경과 생명에 대한 파괴행위는 지구 전체의 위기로 나타났다. 하지만, 교토의정서 탈퇴와 같이 미국이 자행한 일련의 행동은 “하나뿐인 지구” 공동체의 파괴라는 재앙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 환경문제의 총체적 확장이란 면에서 전쟁은 녹색별 지구에 대한 가장 큰 재앙이다. 이번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침공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생태계 교란의 구체적인 상황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지만, 지난 91년 걸프전과 과거의 전쟁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환경재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 있다. 이라크 민중을 포함한 인류와 지구전체는 또 한번 엄청난 파괴에 직면한 것이다.

국제 환경단체인 ‘지구의 벗’은 전쟁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다음과 같이 진단하였다.<sup>11)</sup>

11) War in Iraq to have "devastat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say green groups / Duncan McLaren, Roger Higman,

첫째, 무기 공장과 정유소와 같은 산업, 군사 지점을 표적으로 함에 따라 심각한 화학적 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 코소보 전쟁에 관해 UNEP(유엔 환경계획)가 작성한 리포트에 따르면 군사적 행동이 전반적인 '생태적 재앙'을 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습 중 방출되는 물질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물에 위협을 가져다 주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몇몇 국지적 지역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이라크전에서 사용될 특정 무기 또한 환경 파괴를 야기할 것이다. 고려 대상 가운데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열화 우라늄(DU)탄이다. 열화우라늄탄은 먼지와 폐편으로 부서져 대기 중에 우라늄 산화물을 방출한다. 영국 핵에너지 당국이 제작한 쿠웨이트에 관한 '위험보고서'에 따르면, 호흡기로 들이마셔진 50톤의 열화우라늄은 수십년에 걸쳐 약 50만명의 추가적인 암 사망자를 유발 할 수 있다고 한다.

새로운 전쟁은 또한 그 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다. …… 이라크의 습지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것이며, 특히 철새들에게 상당히 중요하다.

한편, 유엔환경계획의 2003월 3월31일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남부 유전과 석유로 가득한 참호, 그리고 바그다드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발생되는 독성연기와 화염은 이라크의 폐폐된 환경에 더 많은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sup>12)</sup> 이러한 유정의 화재는 1991년 걸프전에 비하면 규모가 적지만, 인근 지역에 계속되는 스모그를 형성시키고 있으며, 유향, 수은, 다이옥신, 푸란 등의 치명적인 오염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3월 31 일자 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일곱 개의 석유저장고 중 세 개의 저장고에서 아직까지 화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로 인한 대기오염의 피해에 대해 유엔환경계획 클라우스 퇴페 사무총장은 "어린이 와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으며, 그 지역의 자연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산업시설에 대한 포격과 전투비행에서의 배출가스가 있다. 특히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는 것은 할로겐과 프레온 등 오존층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사용이다. 1987년 채택되고 1989년 1월부터 발효된 '오존층을 파괴시키는 물질에 대한 몬트리올 의정서(Montreal Protocol)'는 오존층 파괴물질을 감축하고 규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결의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미·영 연합군의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전투 비행은 6만~8만 번에 달하며, 이로 인해 약 2천t의 할로겐이 방출되었다. 특히 스텔스 폭격기와 전투기들은 적군에게 감지가 될 수 있는 배기가스의 먼지를 줄이기 위해 프레온 연료 첨가물을 사용했다. 몬트리올 의정서로 세계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이러한 물질들이 이라크 침공 과정에서 전세계가 3개월 동안 내뿜는 양이 방출된 것으로 알려졌다.<sup>13)</sup>

계속되는 공습과 군수차량과 병력의 다량이동 등 대규모의 군사작전으로 발생한 모래폭풍은 이라크의 자연과 농업생태계에 피해를 주었다. '사막의 피부'라 부르는 견고한 지표면이 군용차의 이동, 공중폭격이나 지뢰의 폭발 등으로 침해되면서 내부의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이 바람에 노출되는 것이다. 미세한 모래 알갱이들은 공기를 타고 북부의 사우디와 쿠웨이트 등 광범위한 영역으로 펼쳐지게 된다. 이로 인한 피해는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이라크 농업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예르네블로프 교수는 진단하였다.

한편, 국제조류보호단체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은 자체 보고서를 통해 겨울 철새들의 서식처 파괴를 지적하였다.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을 끼고 있는 이라크 남동부 메소포타미안 습지대는 조류 수천종의 서식지로 생태계의 보고이다. 더욱이 3, 4월은 철새들의 이동시기로 '철새들의 번식에 치명적인 결과를 유발할 것'이라고 지구환경동향보고는 밝히고 있다. 메소포타미안 습지대를 포함한 이라크의 습지 33곳은 1993년 세계적으로 중요한 습지의 리스트에 포함되어있다. 이를 습지는 국제자연보호연합(IUCN)의 적색목록에 포함된 적어도 7종여의 포유동물과 조류 수천종의 삶의 터전이다.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의 보고서에 따르면 1만 5000km<sup>2</sup>에 달하던 메소포타미안 습지대는 91년 걸프전 이후 대부분 파괴되어 0.3%인 50km<sup>2</sup>밖에 남지 않았다.

Lan Willmore 작성 / 환경운동연합 국제연대팀 번역

12) Air pollution from Baghdad fires poses risk for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says UNEP

13) 예르네블로프, 스위스 IIASA환경생화학 교수

이 때문에 시베리아에서 남아프리카에 이르는 범지구적 생물다양성에도 연쇄적인 악영향을 미쳤다. 도끼비 쥐(몸길이 최대 28cm의 큰 쥐)와 수달류는 거의 멸종했고 이 지역 선주민 마단(ma'dan)인들도 대부분의 생활 근거를 잃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렇듯 총체적인 환경 재앙과 함께 많은 이들은 특히 열화우라늄탄의 사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엔환경계획의 분쟁사후평가부서에서는 2001년 코소보, 2002년 세르비아와 모테네그로, 2003년 헤르체고비나에서의 열화우라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결과를 출간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토양을 통해 여과된 열화우라늄으로 인한 토양오염, 공기중의 열화우라늄 먼지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해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있다'며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해 지적하였다. 실제로 유엔환경계획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전쟁에서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되지 7년이 지난 뒤에도 대기와 지표수에 열화우라늄 물질이 잔존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라크 암 연구소 또한 91년 걸프전 때 열화우라늄탄이 사용된 지역에서 백혈병 발병이 180%~350%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미 국방부 대변인 데이비드 래펜 중령은 영국 BBC와의 회견에서 "열화우라늄탄의 환경 피해에 대해 장기적인 영향이 없다"며 미국은 이번 이라크 전쟁에서 사용된 열화우라늄탄의 잔해를 제거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하였다.

서형원 환경운동연합 평화운동 부장은 "21세기의 첫 전쟁은 세계 최대 부국 미국이 하루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처참한 비극의 땅에 토마호크 미사일을 퍼부어 대면서 시작되었고, 이는 인류의 미래를 불안한 수렁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별 지구'는 그물처럼 엮인 생명계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하나의 작은 문제가 전체 생명계의 균형을 깨뜨리고, 커다란 재앙으로 돌아오게 된다. 전쟁이라는 대량의 살상, 파괴 물량전이 미국과 영국 등 서방 동맹국에 의해 거침없이 쏟아지고 있다.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치명적으로 위협하는 전쟁은 대량소비와 군비경쟁, 자원낭비와 부의 불평등의 구조가 만들어낸 죄악의 환경파괴이다. 자원의 확보와 한계없는 성장만을 강요하는 미국식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전쟁은 당연한 결과일지 모른다.

## 문화재파괴

인류 사회는 과거의 역사적 경험과 지식 등의 축적을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발전시키며, 미래의 희망을 설계하여왔다. 과거와 현재, 미래는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유형·무형의 문화재는 과거 역사의 증거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역사의 경험과 지혜를 드러내주고 있다. 이 중 인류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연유산, 문화유산, 복합유산 등에 대해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세계문화 및 자연유산보호에 관한 협약' 등을 통해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유산의 자연적·인위적 파괴와 손상으로부터 인류 공동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과 자연환경의 파괴가 암묵적으로 자행되는 전쟁에서 문화유산의 파괴 또한 예외일순 없다. 이에 문화유산의 보존이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하고 또 이 유산이 국제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중요성을 고려하여 '전시 문화재보호에 관한 원칙' 등을 통해 전시에 자행되는 문화유산의 파괴를 막기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전쟁 이후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유물들이 각지의 박물관에서 사라졌다"는 이라크 외교관 니자르 함둔의 말처럼 이번 전쟁에서 문화재에 대한 약탈과 파괴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라크는 흔히 말하는 '4대 고대문명' 중 티그리스·우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지역이다. 이곳에서 세계 최초의 도시인 '우르'가 탄생했고 스페르, 아시리아, 바빌론 등 여러 제국들이 용성했

‘다.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세계 최초로 문자 기록을 남겼고 처음으로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었다. 이들은 또 어떤 인류보다 먼저 도자기 그릇에 밥을 담아 먹은 문화인들이었다. 또한 이라크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성지로, 바그다드 북쪽 40Km 지점에 위치한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유적과 9세기에 지어진 모스크 등 수많은 종교유적이 남아있다. 이외에도 함부라비 법전과, 바빌론, 아시리아 제국의 왕궁이 있었던 남루드, 기원전 3세기에 건설된 고대도시 에르빌 등 이라크 곳곳에 2만5천여개의 세계적인 유적지들이 산재해 있으며, 아직 발굴조차 되지 않은 유적지들이 상당수인 것으로 유네스코는 밝히고 있다.

정확한 문화유적에 대한 피해 발표는 나온바 없지만 유네스코는 바그다들의 국립박물관이 들어선 알-주후르궁이 폭격으로 파괴되었다고 전하였다. 또 대부분의 유물들이 벽돌 건축물로 지반이 취약한 사막이나 도심의 이라크 정부청사들 인근에 자리잡고 있어 큰 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박물관의 약탈로 인한 피해도 크다. 28개의 전시실로 이루어진 세계적인 고고학 박물관인 이라크 국립박물관은 총 30만점의 유물 중 17만점가량이 약탈당한 것으로 추정된다<sup>2</sup>고 AP통신은 전하였다. 이중에는 ‘인류최초의 기록물’이자 ‘문자의 효시’인 수메르인의 점토판 조각들과, 인류최초의 설화문학인 ‘길가메시 서사시’서판(書板)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다. 하지만 이라크 국립박물관을 제외한 바그다드의 8개의 박물관과 미술, 티크리트 등 지방에 위치한 박물관의 피해 또한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명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며, 언론보도를 통해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또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기는 용이치 않았다.

다만, 메소포타미아문명이 발생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 유역, ‘신바드의 모험’이나 ‘알라딘의 램프’에서 보듯 고도(古都) 바그다드는 세계인에게 친근한 도시이기도 하다. 미국과 영국의 바그다드와 인근 도시들에 대한 집중 포격, 루트바에서 바그다드로 향해 진행되었던 대규모 지상작전 루트 등을 통해 문화재의 파괴가 예상되며, 4월 9일 미·영 연합군의 바그다드 점령이후 치안 부재 상태에서 일어난 각종 약탈 사건들 또한 심각한 문화재 손실로 이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